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12회 임시회(2017.0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목 지 도 시 위 원 회
전문위원 김용범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7년 04월 27일(木),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7년 05월 2일(火)

4. 관련 법령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5. 제정 이유

- 가. 기존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. 8. 12. 「공동주택관리법령」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하고,
- 나.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의 구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6. 주요 내용

- 가.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“「주택법」”에서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”으로 변경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의2, 제8조, 제10조)

나.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근거 규정 신설(안 제4조제5항)

-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.

7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주택법」이 개정되고,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제정(2016. 8. 12)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,
- 안 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 및 제34조”로 개정함.
- 안 제3조 중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”로 개정함.
- 안 제4조의2제1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43조의3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주택법」 제49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2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주택법」 제50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81조제2항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1조제1항”으로 개정함.
- 안 제8조제3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59조 및 제98조”를 “「공동주택 관리법」 제93조 및 제99조”로 개정함.
- 안 제10조제5항제2호 중 “천재지변” 을 “제4조제1항제2호의 공용시설물 중 천재지변”으로 개정함.

○ 안 제4조제5항은 신설조항으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근거 규정을 만들어 공동주택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이는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